

전문연구요원제도 설명회







병 무 청 산 업 지 원 과

록 차

□ 개 요1
□ 병역지정업체 선정10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14
□ 전문연구요원 편입16
□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20
□ 실태조사 및 평가32
□ 군사교육소집34
□ 위반 시 벌칙 규정35

개 요

1. 제도 의의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이공계 우수인력을 과학 기술의 연구·학문분야에 복무할 수 있도록 도입된 복무제도

※ 석·박사 등의 과학기술 연구 및 학문분야 복무

2. 관련 규정

- O 병역법 제36조 ~ 제41조
- 병역법시행령 제72조 ~ 제93조
- O 병역법시행규칙 제48조 ~ 제66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병무청 훈령)

3. 복무 기간

- O 복무기간: 3년
- 현역병의 복무단축과 연계하여 점차적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됨
 - ㅇ 복무기간 단축 연혁
 - '73. 03. 03. ~ '03. 09. 30. : 5년
 - '03. 10. 01. ~ '05. 06. 30. : 4년
 - '05. 07. 01. ~ 현 재 : 3년

4. 법령 연혁

가. 법 률

연번	법률명	호수/제・개정일자	주 요 내 용	
1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	법률 제2562호 ('73.3.3) 제정	 ○ 한국과학원생 ○ 군수업체 및 연구기관 종사자 ○ 공업, 광업, 건설업, 에너지 산업, 수산 및 해운업계의 주요 기간산업체 ○ 학술, 예술, 체능특기자 ○ 복무기간 : 5년 	
2		법률 제3446호 ('81.4.17) 개정	○ 해양경찰대 경비함정승선요원 추가 ○ 자연계연구기관 추가	
3		법률 제3528호 ('81.12.31) 개정	○ 농촌지도요원 추가	
4	병역법	법률 제3696호 ('83.12.31) 개정	 ○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병역법으로 흡수 → 특례보충역으로 명칭 변경 ○ 기능특기자 추가 	
5		법률 제3778호 ('84.12.31) 개정	○ 한국과학기술원생 중 신설된 학사과정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에서 제외	
6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	법률 제4157호 ('89.12.30) 제정	 ○ 연구요원과 기능요원으로 구분 ○ 학술・예술・체능특기자 폐지 ○ 경비함정 승선요원 폐지 ○ 농촌지도요원 폐지 ○ 군 조달기관 제외 	
7		법률 제4510호 ('92.12.2) 개정	○ 농어업분야 신설 ○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5년→3년)	
8	병역법	법률 제4685호 ('93.12.31) 개정	○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병역법으로 흡수○ 특례보충역 용어 삭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명칭 변경	

연번	법률명	호수/제ㆍ개정일자	주 요 내 용
9		법률 제5271호 ('97.1.13) 개정	○ 보충역 편입자격 완화○ 보충역 복무기간 단축근거 마련(복무기간 단축 36월→28월)※ '97.5.1부터 시행
10		법률 제6058호 ('99.12.28) 개정	○ 병무심의위원회 제도 폐지○ 편입당시 지정업체 해당분야 비 근무자에 대한 연장종사 제도 신설○ 복무관리 우수업체 실태조사 면제 신설
11	병역법	법률 제6972호 ('03.9.3) 개정	 ○ 업체장 4촌이내 혈족 편입 및 전직 제한 ○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 복무기간 단축 △ 전문연구요원 : 5년 → 4년 △ 산업기능요원 - 현 역 : 3년 → 34월 - 보충역 : 28월 → 26월 ※ '03.10.1 편입자부터 적용
12		법률 제7272호 ('04.12.31) 개정	 ○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 4년→3년 ※ '05. 7. 1 편입자부터 적용 ○ 8일이상 무단결근자 편입취소(신설) ○ 4촌이내 혈족 편입금지 위반시 벌칙(신설) ○ 고용주 자료제출 거부시 과태료 부과(신설)
13		법률 제7430호 ('05.3.31) 개정	○ 국외여행허가시 귀국보증서 제도 폐지 - 시행시기 : 05.7.1 부터
14		법률 제7541호 ('05.5.31) 개정	○ 전문연구요원 등 복무만료자 채용시 우대 등 - 응시상한연령 3세 범위안의 연장 - 복무만료 예정전 6월 이내자 채용시 복무만료자로 인정 - 시행시기 : 06.1.1 부터

연번	법률명	호수/제ㆍ개정일자	주 요 내 용
15		법률 제7897호 ('06.3.24) 개정	○ 지정업체의 장 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 시행시기 : 06.9.25 부터
16		법률 제8243호 ('07.1.19) 개정	○ 군전공의 수련자 의과학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근거 마련
17		법률 제8447호 ('07.5.17) 개정	○ 사회복무요원의 전환복무제도 신설
18		법률 제8549호 ('07.7.27) 개정	○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신설 - 시행시기 : 08.1.1 부터
19	병역법	법률 제8749호 ('07.12.21) 개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20		법률 제8852호 ('08.2.29) 개정	○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부처명칭 변경
21		법률 제9620호 ('09.6.9) 개정	 ○ 신상이동통보사항 일부 폐지 - 교육소집 받지 아니한 때, 35세까지 의무종사를 마칠수 없을 때 ○ 비 해당분야 종사자 형사처벌 ○ 편입을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 취득자 형사처벌 ○ 금품수수 등을 통한 부정 편입자 편입취소
22		법률 제11849호 ('13.6.4.) 개정	 ○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35세 → 37세) ○ 박사학위과정 수학자 전문연구요원 편입시점 개선 (수학 중 → 수료 후)

연번	법률명	호수/제ㆍ개정일자	주 요 내 용
23		법률 제12560호 (*14.5.9.) 개정	○ 고용주가 편입을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벌금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 - 2천만원 → 3천만원
25	병역법	법률 제12906호 ('14.12.30.) 개정	○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및 지정업체별 배정 인원을 결정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의 이유로 차별 금지(신설)
26		법률 제14183호 ('16.5.29.) 개정	 ○ 병무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 - 지정업체 → 병역지정업체, 종사 → 복무 신상이동 → 신상변동, 의무종사기간 → 의무복무기간, 교육소집→ 군사교육소집 등

나. 병역법시행령

연번	호수/제·개정일자	주 요 내 용
1	대통령령 제17138호 ('01.3.27) 개정	○ 의무자 신고제도 도입○ 산업기능요원 전직기간 단축(2년 → 1년)
2	대통령령 제17442호 ('01.12.31) 개정	○ 기초의학 전공자(생명과학분야) 전문연구 요원 편입
3	대통령령 제18273호 ('04.2.9) 개정	 ○ 현역입영대상자 중 대학원 학적보유 사실이 있는 사람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종사분야 확대 - 생산품, 제품, 원재료의 운송 분야 ○ 국외여행기간 확대 : 1년6월→2년 ○ 복무규정 위반자 처벌기준 강화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파견근무 허용범위 시행령으로 규정 ○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시기 완화 - 학위취득 6월 이내 →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4	대통령령 제18891호 ('05.6.30) 개정	 ○ 지정업체 실태조사시 복무관리 평가근거 마련 ○ 지정업체 선정 및 소요인원 신청시기 조정 : 7월 → 6월 ○ 산업기능요원 복무분야 확대 - 현역 : 편입당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다만,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기술자격 직무분야 외 생산・제조분야 종사 가능

연번	호수 <i>/</i> 세·개정일자	주 요 내 용
		 ○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시기 완화 - 박사과정 입학하는 달 → 입영(소집)일 5일전
		○ 전문연구요원 승인전직 사유 완화 - 의무종사 2년 경과한 때→1년6월 경과시
5	대통령령 제19688호 ('06.9.25) 개정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승인전직 첨부 서류 감축 - 복무기록표 사본→폐지
	(66.7.26) 711 6	 ○ 국내 교육훈련・파견(출장)근무 절차 개선 3월이상 교육훈련・파견근무 : 승인 3월미만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지정업체간 파견근무 : 신상이동 통보 7일미만 교육훈련・파견근무 : 복무기록표 기재로 신상이동통보 갈음
		○ 전문연구요원 수학 승인절차 개선 - 승인→신상이동통보로 갈음
6	대통령령 제20286호	○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제도 세부기준
	('07.9.27) 개정	및 절차 마련 ○ 전문연구요원 법인단위 인원배정
7	대통령령 제21069호 ('08.10.8) 개정	 ○ 지정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선정추천명부만 병무청 제출(선정원서 미제출)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전직제한기간 폐지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 비지정업체 파견 업체장 부당지시에 의한 위반자 처벌기준 완화 편입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업체 근무시 1월이상 편입취소 → 연장종사 산업기능요원 학력별 기술자격등급 조정

연번	호수 <i>/</i> 세·개정일자	주 요	내 용	
8	대통령령 제21867호 ('09.12.7) 개정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승인전직사유 추가 3월이상 휴업 또는 영업정지 ○ 위반행위신고자 및 부당해고자 전직승인 절차 간소화 - 개정전 : 의무자 → 지정업체의장 → 관할 지방병무청장 - 개정후 : 의무자 → 관할지방병무청장 		
9	대통령령 제22414호 ('10.10.1) 개정	- 대구·경북과학기술	Ų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ċ원 신설에 따라 추가	
		○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자 복무단축	
		개정 전	개정 후	
10	대통령령 제24238호 ('12.12.20) 개정	○복무기간단축 대상 • 1년 이상 종사 후 편입취소자 ○복무기간단축 방법 • 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의무종사기간 4개월마다 1개월씩 단축	○ 복무기간단축 대상 • 편입취소자 ○ 복무기간단축 방법 • 교육소집기간 만큼 단축 • 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의무종사기간 4일 마다 1일씩 단축	
11	대통령령 제24553호 ('13.5.31.)개정	○ 중소기업 연구 인력난 - 지정업체 선정 기회	해소 및 기술경쟁력 강화 회 확대 : 1회→ 2회	
12	대통령령 제24890호 ('13.12.4.) 개정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관리 - 수학 중에 선발하여 수료전 까지 편입다 상자로 관리 ○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과정 '수학'용어 명확호 - 수학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이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할 때까지로 정의		
13	대통령령 제25687호 ('14.11.10.) 개정	○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연계대학원장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위반 사유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50만원~2,000만원)		

연번	호수 <i>/</i> 제·개정일자	주 요 내 용
14	대통령령 제26348호 (*15.6.30.) 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 허가제도 개선 - 국외여행 허가기간 : 2년 이내 → 1년 이내 - 복무기간 인정기간 : 통틀어 6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15	대통령령 제26551호 (*15.9.25.) 개정	○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울산과학기술 원법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른 정비 - 지정연구기관에 울산과학기술원(추가)
16	대통령령 제27220호 (2016.6.14.) 개정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병가기간 30일로 단축하여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 제고 - 복무기간 인정 병가기간 : 3개월 → 30일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일부 승인전직 대기기간 단축 - 지정업체가 결정된 후에 승인을 받은 사람의 전직대기기간 : 3개월 → 14일
17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11.29.) 개정	 ○ 병무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 - 지정업체 → 병역지정업체,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 → 입영일이나 소집일, 의무종사기간 → 의무복무기간 교육소집 → 군사교육소집 신상이동 → 신상변동, 종사 → 복무 등

병역지정업체 선정

관련 규정

- 가.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 나. 병역법시행령 제72조 ~ 제76조
- 다. 병무청 훈령 제3조 ~ 제15조
- ※ 병역지정업체 :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 기관을 말함

선정 절차



평가등급과 순위 부여 선정신청서 제출

실태조사 후 병역지정업체 선정

선정결과 확인

*()은 중소(벤처포함)기업 부설연구소로 상·하반기 2번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가.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 나. 법인등기부등본
- 다.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 또는 방위산업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 라. 연구전담요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
- 마.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등

선정기준 / 추천권자

분야별		선정기준	추천권자 (접수기관장)
기업부설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 전담요원 5인 이상(중소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인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학원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교육부장관
대 학	대 학 부 설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계대학 부설연구기관	(한국연구재단)
내 약	기 초 과 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 역 혁 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일자리혁신과)
국가 기관	국가/ 자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 요원 5인 이상	
	정 부 출 연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연구기관	
	특 정 기 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공 공 법 인	공 익 법 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설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 요원 5인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산압기술진홍협회)
	공 공 기 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 요원 5인 이상	
	의 료 연 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서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	
방위	산업	방위사업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과학연구소장)

선정제외

- 가.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 미경과 연구기관
 - 복무관리 부실 사유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확정
 -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확정
 - 업체의 요청
 - ※ 업체요청으로 선정취소 후 업체의 장(법인대표) 변경된 경우 제외
- 나. 연구기관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5년이 미경과 연구기관
- 라. 『산재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업무 상의 재해로 전문연구요원이 사망한 연구기관

계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이 병역지정업체를 인수 · 합병을 한 후 인수 합병한 업체가 병역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병역지정업체 지위를 승계토록 함

선정취소

가. 취소사유

- ①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 ② 병역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 ③ 연구소의 인정ㆍ지정 등이 취소된 때

- ④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때
- ⑤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 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워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때
- ⑥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미달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때
- ⑦ 복무관리 위반업체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⑧ 병역지정업체의 장(복무관리담당자 포함)이 전문연구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⑨ 병역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선정취소를 요청한 업체

나. 취소절차

-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선정취소대상 업체를 병무청장에게 보고
 - 위 취소대상 업체 중 ⑤와 ⑥의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취소대상 업체 사전 통지 후 의견수렴을 거침
- 병무청장이 선정취소 후 관할 지방병무청을 거쳐 해당 병역지정업체 통보

업종변경

- 가.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통보
- 나. 병무청장이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후 관할지방병무청을 거쳐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통보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관련 규정

- 가.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 나. 병역법 시행령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 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50조의2(필요인원의 통보)
- 라. 병무청 훈령 제16조 ~ 제22조

업무절차



인력지원 규모

- 가. 현역병입영대상자 : 매년 2,500명
- 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지정업체별 편입인원을 지원인력 으로 봄

인원배정 제한

가. 실태조사 등으로 복무관리 부실이 확인된 업체

○ 고발업체 : 3년간 배정제한

○ 경고업체 : 2년간 배정제한

○ 주의업체 : 1년간 배정제한

나. 1년간 인원배정 제한 업체

○ 2년 이상 연속 인원배정 받고도 채용실적 없는 업체

○ 선정기준(연구인력)에 미달하는 연구기관

○ 병역지정업체 중에 파산이 확인된 업체

다. 근로감독관 등으로부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2년간 배정제한

라.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법원장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에게 위법 · 부당한 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2년간 배정제한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에 따른 업무 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 3년간 배정제한

인원배정 우대

-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평가 우수업체
- 정부의 정책적 지원분야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

관련 규정

- 가. 병역법 제37조 및 제38조의2(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및 제한)
- 나. 병역법 제41조(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다. 병역법 시행령 제78조 ~ 제81조의2, 제91조의2 ~ 제92조
- 라. 병무청 훈령 제23조 ~ 제31조, 제47조 및 제48조

업무절차



* 의무자 :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 작성

편입대상

- 가.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으로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 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포함
- 나,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 사람(석 · 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 수료자 포함)
- 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 런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 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 ※ '가'의 경우 기업 등 연구소 해당, '나':'다'의 경우 자연계대학원 해당

구비서류

- 가.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서
- 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 다. 학위수여증명서 등 관할지방병무청장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

편입 제한(제외)

가. 병역지정업체의 장(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 나.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재편입
- 다. 35세까지 의무복무를 마칠 수 없는 사람
- 라 기타 법령에 의한 편입 제외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
-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
-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편입취소

- 가. 취소사유
-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한 때
- 의무복무기가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
-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전직 허용기간 6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
-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업체의 장의 4촌 이내 혈족 편입 또는 전직 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 수학규정을 위반한 때

나. 취소절차

-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편입취소 대상 통보 후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 편입취소 처분
- 편입취소 처분의 유보
 - 의무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때 **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유보원서 제출

다. 의무부과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라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으로 의무부과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1. 관련 규정

- 가. 병역법 제39조 및 제40조(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신상변동통보)
- 나. 병역법시행령 제83조 ~ 제91조
- 다. 병무청 훈령 제32조 ~ 제55조

2. 복무할 해당분야

전공 및 학위와 관련되는 편입당시의 병역지정업체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3.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담당 및 신규편입자 교육

- 가.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인사) 담당자 교육
- 시기 : 매년 1회 이상 / 관할 지방병무청장
- 주요 내용 : 제도전반 및 복무관리 규정 중점 교육



- 불참 시 병역지정업체 평가 불이익(감점 처리)
- 나. 신규편입자 교육
- 시기 : 편입 후 2개월 이내 / 관할 지방병무청장
- 주요 내용 : 복무규정 등 제도전반 및 위반행위 신고방법 등
- ※ 온라인 교육 개설 : 인터넷 포털「산업지원 병역일터(work.mma.go.kr)」,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탑재 플랫폼 등 변동 가능

4. 겸직금지

가.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83조
- 병무청 훈령 제37조
- 나. 겸직할 수 없는 경우
-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 편입당시 연구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 다. 겸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연구업무에 지장이 없는 근무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무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 복무만료 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 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은 때(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 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 영리활동 통보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이 근무시간 중 연구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 추구활동 등을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전 직

가.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 병무청 훈령 제39조 ~ 제44조

전문연구요원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병역지정 업체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거나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음

나. 승인전직 절차



다. 전직대기 기가

- 1차 : 14일(1년 6개월 경과 후 전직,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기업체 전직, 중소기업 외 연구기관→증소기업 전직), 3개월(위 사유 외)
 - 승인전직자는 승인일로부터, 당연전직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 2차 :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의무복무기간 산정 제외)
 - ※ 전직대기기가 초과 시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라. 당연전직 대상

-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
-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등

마 승인정직 대상

- 전무연구요워 1년 6월 이상 병역지정언체 복무한 때
- 병역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통산 3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되었을 때
-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때 등

바. 전직승인 제한

- 승인전직 대상으로서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의 전직 다만,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때에는 제외
-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배정인원 회수 또는 당해년도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 전직승인으로 핵심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핵심 기술의 유출 위험이 있는 때
- 보충역으로서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학사 학위 편입자에 한함)이 중소기업 외의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등 ※ 대기업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제한 제도개선 추진 중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 근무

가,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 병무청 훈령 제45조 ~ 제46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 중에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 교육훈련 및 관련업무 수행을 위해 파견(출장) 근무할 수 있음

나. 국내 파견(출장) 범위

- 병역지정업체 상호간(관련업무 수행 및 공동연구)
- 공동연구를 위한 동일법인이나 다른 법인내 비병역지정업체 연구소
- 병역지정업체의 부소재지 연구소 등
- ※ 비병역지정업체 및 부소재지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증된 연구소
- 연구업무 특성상 실험장 등에서 연구해야할 경우
-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또는 기술지도 등

다. 승인절차

- 3개월 이상 교육훈련 및 파견 : 지방병무청장 승인
- 3월 미만 교육훈련 및 파견, 병역지정업체가 파견 : 신상변동통보
- ※ 7일 이내 교육훈련 및 파견 : 복무기록표 기재·정리로 승인 갈음

라. 승인기간

- 국내교육훈련 :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6월
- 국내파견근무: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2년(다만, 산업기능요원은 1년)

7. 국외여행 허가

가.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 병무청 훈령 제47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출장 등(휴가기간 중 단기 국외여행 포함)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나. 국외여행허가 기간

- 국외여행허가 기간은 의무종산기간 중 통산 1년 이내로 하며 이 경우 통산 3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봄
 - * '15. 7. 1. 이후 편입자에 해당하며, '15. 6. 30. 이전 편입자는 종전 규정 적용
-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 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모두를 복무기간으로 인정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외여행허가의 범위(훈령 제47조, 별표2)

목 적	세 부 내 용	구 비 서 류
공동연구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 연구기관 과의 공동연구계약, 공동연구협 약 또는 기술협력 협약에 의한 공동연구	공동연구계약서, 공동연구협약 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 당서류 사본 1부
기술연수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기관과 의 기술도입계약 또는 기술협력 협약에 의한 국외기술연수 연구 장비의 도입에 따른 기술연수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단, 연구장비의 도입계약서에 기술연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계약서 사본)

목 적	세 부 내 용	구비서류
기술지도	국외에서 소속 국내 병역지정업체 의 제품기술을 수입하거나 기술 협력관계에 있는 OEM 생산관계 에 있는 외국기업(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기술지도를 받을 외국기업이나 외국기관과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1부(단, 제품수출계약서에 기술 지도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에는 동 계약서 사본)

8. 수 힉

가.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88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 수업)할 수 없음

나. 수학금지 예외

-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 다.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과정 수학
-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그 수학 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함
-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과정을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병역지정 업체장에게 수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병역지정업체장은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하여야 함
-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25

9. 신상변동 통보

가. 관련근거

- 병역법 제40조
- 병역법 시행령 제91조

병역지정업체장은 전문연구요원이 의무복무 중 발생하는 신상변동사항과 병역지정 업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신상변동통보 사항

- 1) 의무자 관련사항
-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 의무복무기간 중 무단결근한 때
- 휴직하거나 정직된 때 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때
- 의무복무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휴가 ·휴직 및 결근을 한 때
- 의무복무기간 중 8일이상 3월 미만의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 교육훈련 및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때
- 동일법인내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게 된 때
- 병역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때
- 2) 병역지정업체 관련사항
-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때

- 병역지정업체가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 병역지정업체로서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또는 업종의 변경,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 이전된 때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28)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27

의무복무기간 만료

가.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89조 ~ 제90조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편입한 날부터 기산하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만료처분 함.

나. 의무복무만료 처분 절차

병역지정업체장

복무만료 대상자 통보 (매월)



10일까지

<mark>관할지방병무청장</mark>

매월 1일 해당 월 만료대상자 일괄 만료 처분



에게 통보

병역지정업체장

처분 결과 의무자 통보

다. 의무복무기간 산정 제외

-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 휴직 또는 정직기간
- 병역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또는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 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 기간
-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중 3월을 초과하는 기간
 - * 1년6월 경과사유 전직,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중소기업 외에서 중소 기업으로의 전직의 경우 14일을 초과하는 기간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인해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
-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위반행위 행정처분

가. 의무자

○ 의무자가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을 경우 편입 취소, 단, 병역지정업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영 제91조의3, **별표 3)**을 적용

	유 형	내 용	처	리	기 ﴿	기 준	
			위반	기간	의득	P자	
1.	편입 당시 병역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가.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경우			연장	복무	
		나.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를 한 경우	3개월		연장	복무	
			1개월 3개월		경	고	
			1개월	미만	시	정	
2.	편입 당시 해당 분야가 아닌 분야 근무	가. 편입 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아닌 분야(연구·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직, 영업직 등 다른 분야)에 근무한 경우			연장	복무	
		나. 편입 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연구·제조·생산 분야 에 근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한 경우	3개월	이상	연장	복무	
			T. 11	, 0	경	고	
			1개월	미만	시	정	
3.	겸직금지규정 위반	병역지정업체의 이사·감사 등 임원을 겸직하 거나 연구 또는 제조·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1개월	이상	연장	복무	
		경리활동을 한 경우	1개월	미만	경	고	
4.	수학규정 위반	의무복무기간 중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육기관 에서 수학한 경우			연장	복무	
5.	동일시항 반복 위반	가. 연장 복무 후 다시 연장 복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편입	취소	
		나.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연장	복무	
		다. 시정 이후 다시 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	고	

나.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기준』(훈령 제62조 관련, 별표 3)

유 형	내 용	위반기간	
1. 편입당시 병역	가. 편입당시부터 병역지정업체(사업장)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시킨 때		고발
	나.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시킨 때	1월이상	고발
업장)가 아닌		1월미만	경고
다른업체 근무	다.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지연통보 포함)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시킨 때	3월이상	고발
등		1월이상 3월미만	경고
		1월미만	주의
	가. 편입당시 연구·기술자격·면허 외(사무직, 영업직 등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분야에 근무하게 하거나 근무를 겸하여 시킨 때	1월이상	고발
2. 편입당시 해당 분야가 아닌		1월미만	경고
	나. 편입당시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연구제조, 생산분야에 근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시킨 때	3월이상	고발
등		1월이상 3월미만	경고
		1월미만	주의
3. 수학금지	의무복무기간중 승인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 도록 허용한 때	6월이상	고발
규정위반		6월미만	경고
	병역지정업체의 이사감사 등 관리직을 겸직하고 있 거나, 연구 또는 제조·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하도록 한 때	3월이상	고발
4. 겸직금지 규정위반		1월이상 3월미만	경고
		1월미만	주의
	가. 허위통보		고발
5. 신상변동	나.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된 사항 미통보(지연	1월이상	주의
통보규정	통보 포함)	1월미만	시정
위반	다.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 없는 의무자 및 업체	3월이상	주의
	관련 사항 미통보(지연통보 포함)	3월미만	시정
6. 자원관리	가. 복무기록표, 명부, 개인별 복무상황부, 출근부 등 제73조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서류 미관리 또는 미정리		시정
소홀	나. 복무기간만료 통보 지연	10일이상	시정
	경고이상 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경고처분을 받게 되는 때		고발
7. 동일사항	주의이상 처분을 받고 다시 주의처분을 받게 되는 때		경고
반복 위반 가중처벌	시정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와 2회 이상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주 의 이상 처분 후 다시 시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주의

※ 비 고

- 1. 가중처벌 여부는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내에 위반사항 유무에 따라 결정한다.
- 2. 동일사항이란 위반내용 가, 나, 다, 라 "목"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목"내에서의 내용을 동일사항으로 본다.
- 3. 제5호 다목의 신상변동통보사항 중 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 등 다른 업체 근무사유에 대한 규정 위반은 1항 다목을, 수학금지규정 위반은 제3호를 적용한다
- 4. 제5호 및 제6호의 위반기간은 각각 발생한 단일 건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제5호 신상변동 통보규정 위반 시 여러 사람에 대한 위반 및 한 사람에 대한 2건 이상의 위반은 각각의 건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동일시점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실태조사 및 평가

관련 규정

가. 병역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나. 병무청 훈령 제56조 ~ 제66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의 자율복무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에 대하여 실태조사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음

복무관리 실태조사

가. 정기조사 : 지방병무청 계획에 따라 모든 병역

지정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실시

(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 특별조사 : 복무관리 부실업체, 민원발생업체 등에

대해 지방병무청 계획에 따라 수시 실시(연중 실시)

병역지정업체 평가

가. 기본평가 : 실태조사를 한 업체 (매년 1.1.~ 9.30.)

나. 수시평가 :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연중)

다. 종합평가: 기본평가 + 수시평가(매년 10.1.~10.10.)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31)

평가대상 및 방법

가. 평가대상 : 모든 병역지정업체

나. 평가방법 : 종합평가 결과 합격(60점 이상), 불합격(60점 미만)으로

평가

평가 요소별 점수

가. 휴ㆍ페업ㆍ영업정지 여부 등 병역지정업체 확인사항 : 10점

나.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복무관리 평가 : 35점

다. 병역지정업체 행정처리 실태: 20점

라. 복무만족도: 15점

마. 가/감점 : 가점(12개 항목별, 1~20점), 감점(12개 항목별, 1~40점)

평가결과 적용

가. 합격 업체는 다음연도 인원배정

○ 지방청별 상위 10% 이내 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 상위 30%이내 업체 결정시 동점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

▲ 연구(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인원이 많은 업체

▲ 가점점수가 높은 업체

▲ 선정연도가 빠른 업체

나. 불합격 업체는 다음년도 인원배정 제한

군 사 교 육 소 집

관련 규정

- 가. 병역법 제55조
- 나. 병역법 시행령 제106조 ~ 제115조
- 나. 병무청 훈령 제67조 ~ 제70조

전문연구요원은 의무복무 기간 중 4주간의 군사교육을 위한 군사교육소집을 받아야 하고 교육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군사교육소집 통지

- 가. 대상선발 : 병역지정업체의 연구활동 및 제조·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입일자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
- 나. 교육시기 : 가급적 편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다. 교육통지 :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입영일 40일전까지 송부, 입영 일 30일전까지 본인 송달
- 라. 교육기간 : 30일 이내(군사기초훈련 실시)
- 마. 교육부대 : 논산 육군훈련소 등

군사교육소집 유보 대상

- 가. 전문연구요원이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에 수학 중인 때
- 나. 전직대기 중인 때
- 다. 국외근무 또는 승선 중인 때
- 라. 30일 이상 병가 중일 때

위반 시 벌칙 규정

1. 신상변동사항 통보 위반 (법 제84조 제1항)

○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변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전문연구요원 해당분야 복무 위반 (법 제89조의2 제5호)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으로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 편입 및 복무의무 위반 (법 제92조)

- 고용주가 4촌 이내 혈족을 편입 또는 전직하도록 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복무하게 한 때에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병역지정업체장이 편입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4. 자료제출 위반 (법 제95조 제3항)

○ 고용주가 정단한 사유 없이 실태조사시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법인처벌 (법 제96조)

○ 고용주가 병역법 위반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300 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